

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0. 5.(수)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바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제1호에 의거,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7.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3.21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 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
- 의결 사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의거, ‘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’에 해당됨

2 의결사항

가. 「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54(서)-206호)

○ 방통위와 소속 기관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 설립·감독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 등을 위해 마련된 「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제명 변경

- (개정사유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('09.3.1 시행)에 따라 방통위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가 비영리법인 설립·감독 업무를 각각 담당하므로 제명에 이를 반영
- (개정내용) 「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

② 업무 적용범위 명확화

- (개정사유)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간 비영리법인 설립·감독 사무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의 혼란 발생
- (개정내용) 방통위 소관 정책과의 연계성, 지방 소재 법인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직접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조항 개선

③ 고시 대상 비영리법인 추가

- (개정사유) '09년 방통위 소관 비영리법인 고시 개정 이후, 법인의 청산, 신설 등에 따라 고시 대상 법인을 새롭게 반영할 필요
- (개정내용) 현행 고시된 17개 법인 중 청산 진행 중인 1개 법인 삭제, 5개 신설 법인 추가 등 총 22개 법인을 지정 고시

④ 각 부처,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

- (개정사유) 법인 설립·감독 사무에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의 '행정정보 공동이용'을 적용하여 민원인이 법인 설립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
- (개정내용)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설립, 청산 신고시 등에 제출하는 재산목록,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, 관련 서류 제출 생략

⑤ 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일원화

- (개정사유)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정관 변경 허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처리 절차 개선 필요
- (개정내용) 법인의 정관변경 승인 요청 시에도 설립 허가와 마찬가지로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또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접수 및 검토 후 결과 회신
- 주무 과는 사업 내용과 관련한 정관 변경의 허가 조건 충족여부를 검토

⑥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(醇化) 등

- 규정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, 규정 문장에 사용된 한자와 용어,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
- 법인해산 신고서,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, 청산종결 신고서 서식 신설

나. **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** -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40개사 - (2011-54(서)-207)

○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에 의거,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4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승인내용 >

① 디지털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 상품 변경 : 37개사

㉠ (주)티브로드 계열 14개사*

상 품 명	상품내용	이용요금(VAT 별도)
1. 유료채널(신규)		
- 허니TV	- 성인영화 등	- 월정액 : 7,500원
2. 부가서비스(신규)		
- 키즈 잉글리쉬	- 어린이 영어교육 등	- 주/월정액 : 3,000원/6,000원 이하 - 패키지구매 : 1,000 ~ 50,000원 이하
- 동화나라	- 플래시동화/VOICE/교육 등	- 월정액 : 2,000원 이하
- 뽀로로 게임	- 유아용 게임 등	- 월정액 : 3,500원
- 지니게임	- 아바타 구매/게임 등	- 10,000원 이하
- 지니만화/화보	- 만화(어린이, 성인, 무협 등) 및 스타 화보 서비스	- 일/주/월정액 : 3,000원 / 7,000원 / 10,000원 이하 - 권당구매 : 200원 ~ 2,000원 - 시리즈(5 ~ 20편) : 1,200원 ~ 9,000원 - 선불이용권 : 20,000원 이하 - 패키지(6 ~ 8편) 구매 : 4,000원 이하
- 문자서비스	- 문자발송 서비스	- STB to 핸드폰 : 30원 - STB to STB : 30원 - 핸드폰 to STB : 50원
- 노래방서비스	- 양방향 노래방서비스	- 일/월정액 : 1,000원/3,000원

*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, (주)티브로드동대문방송, (주)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, (주)티브로드수원방송, (주)티브로드기남방송, (주)티브로드부산방송, (주)티브로드한빛방송, (주)티브로드새롬방송, (주)티브로드서해방송, (주)티브로드남동방송, (주)티브로드중부방송, (주)티브로드전주방송,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, (주)티브로드동남방송

㉠ ㈜티브로드계열 7개사**

상 품 명	상품내용	이용요금(VAT 별도)
1. 유료채널(신규)		
- 허니TV	- 성인영화 등	- 월정액 : 7,500원
2. 부가서비스(신규)		
- 키즈 잉글리쉬	- 어린이 영어교육 등	- 주/월정액 : 3,000원/6,000원 이하 - 패키지구매 : 1,000 ~ 50,000원 이하
- 동화나라	- 플래시동화/VOICE/교육 등	- 월정액 : 2,000원 이하
- 뽀로로 게임	- 유아용 게임 등	- 월정액 : 3,500원
- 지니게임	- 아바타 구매/게임 등	- 10,000원 이하
- 지니만화/화보	- 만화(어린이, 성인, 무협 등) 및 스타 화보 서비스	- 일/주/월정액 : 3,000원 / 7,000원 / 10,000원 이하 - 권당구매 : 200원 ~ 2,000원 - 시리즈(5 ~ 20편) : 1,200원 ~ 9,000원 - 선불이용권 : 20,000원 이하 - 패키지(6 ~ 8편) 구매 : 4,000원 이하
- 문자서비스	- 문자발송 서비스	- 핸드폰 to STB : 50원
3. VOD(추가)		
- RVOD	- 최신 프리미엄 영화 등 (HD/3D/극장 동시개봉작 등)	- 변경전 : 편당 500원 ~ 3,500원 → 변경후 : 편당 500원 ~ 10,000원 이하

** (주)티브로드노원방송, (주)티브로드중로중구방송, (주)티브로드서대문방송, (주)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, (주)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, (주)티브로드대경방송, (주)티브로드대구방송

㉡ ㈜씨앤엠계열 16개사***

상 품 명	상품내용	이용요금(상한)
1. 유료채널(신규)		
- 허니TV	- 성인영화 등	- 월정액 : 7,500원
2. 부가서비스(신규)		
- 뽀로로 놀이	- 유아용 게임 등	- 일/월정액 : 1,000원/ 3,500원

*** (주)씨앤엠, 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

㉢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 : (주)씨제이헬로비전계열 3개사*

폐지상품	폐지사유	주파수 대역 운용계획
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(CH76개)	디지털 전환으로 가입자가 없는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	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주파수 대역의 50% 이상을 디지털 실시간방송 채널로 운용

*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

다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4개사 - (2011-54(서)-208)

○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종합유선방송사업자	변경사항	신청 주요내용
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	운용채널 및 시설변경	DMC 전환(KDMC→CJDMC)에 따른 시설 변경 등
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		
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		
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		

라.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- (주)씨엠비대전방송의 (주)씨엠비대구동부방송 주식소유 - (2011-54(서)-209호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8조제1항과 「방송법」 제15조의2제1항에 의거, (주)씨엠비대전방송의 (주)씨엠비대구동부방송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식소유 인가 및 방송법상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주식취득법인 : (주)씨엠비대전방송(대표자: 이인석, 이한성, 김동수) >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주 현황	경영 현황('10년)		
		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종합유선방송 (34만명) 초고속인터넷 (2.4만명)	대전 중구, 서구, 동구, 유성구, 대덕구	·자기주식 67.7% ·(주)씨엠비홀딩스 12.1% ·이한담 8.0% ·이한성 7.7%	42억원	437억원 (통신 29억)	54억원

< 피주식취득법인 : (주)씨엠비대구동부방송(대표자: 황광주, 이한담) >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주 현황	경영 현황('10년)		
		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종합유선방송 (5.2만명) 초고속인터넷 (0.3만명)	대구 동구	·이인석 49.4% → 0% ·(주)씨엠비대전방송 1.3% → 50.7% ·(주)씨엠비홀딩스 49.3%	72억원	42억원 (통신 4억)	2억원

마.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- 한국에이치디방송(주) - (2011-54(서)-210)

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의거, 한국에이치디방송(주)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등록하기로 의결함

< 한국에이치디방송(주)의 등록 내용 >

신청 채널명	콘텐츠 공급분야	대표자	편성 책임자	최대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포커스 무비 (Focus Movie)	정보·안내 (영화)	문성길	김영실	한국디지털위성방송(주) (85%)	109억원 (75억원)
포커스 키즈 (Focus Kids)	정보·안내 (영유아교육 콘텐츠)				

바. 1.8/2.1GHz대역 무선설비규칙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54(서)-211)

○ '11.6월 주파수 재할당 및 '11.8월 주파수 경매에 따라 할당 예정인 1.8GHz/2.1GHz 대역에서 LTE서비스를 적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LTE 기술방식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무선설비규칙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'11.6월 1.8GHz대역의 20MHz폭씩을 KT와 LGU+에 재할당 하였으며, '11.8월 경매 결과에 따라 1.8GHz대역 20MHz폭을 SKT에, 2.1GHz대역 20MHz폭을 LGU+에 금년말 할당 예정임에 따라,
- 이통 3사가 1.8/2.1GHz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적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기지국 장비 및 단말기 제작과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에 필요한 무선설비규칙 기술규격을 마련할 필요
- 지난 '11.5월 LTE용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800/900MHz대역에서 LTE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규격 및 인접대역간 간섭방지를 위한 보호기준 등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,
- 1.8/2.1GHz대역에서도 동일하게 국제표준 규격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여 기술 기준 마련

※ 1.8/2.1GHz대역 : 1745~1785/1840~1880MHz 및 1920~1940/2110~2130MHz

사.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장애인방송 관련 - (2011-54(서)-212)

○ 제47차 위원회('11. 8. 18) 보고 후,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장애인방송 의무화 및 대상 프로그램의 종류 확대

< 입법예고 내용 >

-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

<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>

- (국가인권위)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재난·선거방송 등에서 전체 프로그램으로 확대
- (검토 결과)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되,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에 제시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경우 제외

② 장애인방송 제공대상 사업자 확대

< 입법예고 내용 >

- 장애인방송 제공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고시에서 규정토록 함

<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>

- (국가인권위) 장애인방송 제공대상 ‘사업자의 범위’라는 표현 삭제
- (검토결과)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, 장애인방송 제작이 어려운 방송사업자를 고려하여 매출액과 시청점유율 등 제외기준을 명시

③ 장애인방송 기준과 방법 고시 위임

< 입법예고 내용 >

- 장애인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고시에서 규정토록 함

<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>

- (국가인권위, 보건복지부) 기준과 방법을 고시할 때 국가인권위와의 사전협의 조항 추가
- (검토결과) 관계부처 의견 수용
- ※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방통위가 장애인방송의 기준 등을 정할 때 국가인권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음